

교원자격 취득 결격사유 확인 추가

1. **관련법령:** 「유아교육법」 제22조의 2 및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1조의 2

2. 내용

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(유아교육법 제22조의 2 동일)

초·중등교육법 제21조의2(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 21조 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.

1. 마약·대마·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
2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3. 성인에 대한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
3. **적용대상:** 2021. 6. 23 이후 교원자격검정이 이루어지는 모든 사람
(교원자격증 기존 미발급자 발급 신청 및 부전공 표시과목 추가의 경우는 미해당)

4. 확인방법

- 가. 성범죄경력: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제출자에 대해 일괄 경력조회 예정
(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제출로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 같음)
- 나. 마약·대마·향정신성의약품 관련: **의사진단서** 또는 **검사결과통보서** 제출

5. **제출서류**(※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신청기간에 함께 제출/아래 가,나 중 택 1)

가. TBPE 검사 음성반응 검사결과통보서 원본

※ 한국건강관리협회, 의료기관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음

나. 의사진단서 원본

※ 연세대학교 건강센터 또는 병원, 의원에서 발급가능

※ 진단서에 다음 두가지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

- TBPE 검사결과

- '**마약·대마·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**' 을 증명하는 문구 필수 기재